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35 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장철민·김한규·허성무

민병덕 · 임오경 · 황명선

한병도 • 이수진 • 윤종군

김종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.

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,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하며, 이에 맞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을 개정하고자 함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434호), 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 433호)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43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4조(정치자금의 세액공제) 거	<u>&lt;삭 제&gt;</u>
주자가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	
정당(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	
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	
다)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	
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	
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「조	
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제1항에	
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	
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	
공제한다.	